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관리 위탁업체를 보완·명시하여 도시림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림등의 관리 위탁업체 보완(안 제8조)

종전의 조례 8조에 도시림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따른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림등의 관리위탁 사업에 조경공사업자·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산림자원법」에 위배되게 식물방제업 등록업체를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현행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및 식물방제업 등록업체에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조경공사사업자 및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보완·변경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정당한 사업자의 참여 및 도시림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